

의안번호	2205279
의 퇴 인	강득구의원
회 답 일	2024.12.20.
추계번호	24D482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국가가 가정폭력범죄 등의 피해자에게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000만원, 2030년 5,9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억 9,300만원(연평균 5,9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가정폭력범죄 등의 피해자에게 주거지원금 지급 (안 제32조의2제1항 및 안 제32조의3)	60	58	57	59	59	293	59

주: 1. 가정폭력범죄 등의 피해자에게 주거지원금 지급(안 제32조의2제1항 및 안 제32조의3)은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주거지원금 지급대상자 수를 가정보호사건 피해자, 스토킹범죄 피해자, 전자장치 부착자의 피해자로 구분하고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통계,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현황 등을 바탕으로 추정하며, 1인당 주거지원금을 3개월분의 주거급여로 가정하여 추계
 3. 실제 주거지원금 지급대상자 수, 평균 월임차료 등에 따라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32조의2(주거지원금의 지급요건)제1항 및 안 제32조의3(주거지원금 금액)	국가는 가정폭력범죄 ¹⁾ , 아동학대범죄 ²⁾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³⁾ , 스토킹범죄 ⁴⁾ , 가해자가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범죄 ⁵⁾ 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동거가족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인 경우 범죄행위가 발생한 주택(이하 “해당주택”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하여 주거지원금(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음
		주거지원금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구심의회가 정함 다만, 월차임 없이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해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구심의회가 정함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2	안 제32조의2(주거지원금의 지급요건)제3항 및 제32조의4(주거지원금의 환수)	국가는 지급한 주거지원금의 범위에서 해당 주거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가정폭력범죄 등의 범죄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주거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를 거쳐 그가 받은 주거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같은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처분(접근행위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
-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로서 아동학대행위자가 같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접근행위 제한)을 받은 경우
-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같은법 제4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호처분(접근행위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
-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로서 스토킹행위자가 같은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경우
-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로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같은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을 부과받은 경우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2조의2(주거지원금의 지급요건)제1항 및 안 제32조의3(주거지원금 금액)	○	
2	안 제32조의2(주거지원금의 지급요건)제3항 및 제32조의4(주거지원금의 환수)	X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건수 및 평균 배상금, 주거지원금 부정지급 등에 따른 환수 건수 및 평균 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주거지원금 지급대상자 수를 가정보호사건 피해자, 스토킹범죄 피해자, 전자장치 부착자의 피해자로 구분하고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통계,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현황 등을 바탕으로 추정
 - 법무부의 사범연감에는 상해·폭행, 아동학사 등을 포함한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 현황을 제공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 규정한 개별법에 따른 보호처분 건수는 다루고 있지 않음
 - 전자장치 부착자 중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경우는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현황’ 자료에 가정보호사건의 접근금지 보호처분 비율 0.3%를 적용하여 추정
- 개정안에서 주거지원금을 월차임의 3개월분으로 규정하여 본 추계에서는 3개월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성범죄 피해자 등에 지급하는 주거지원금을 주거급여 기준으로 산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
 - －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⁶⁾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⁷⁾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본 추계에서는 주거지원금 지급대상자 수를 산출하고 1인당 주거지원금을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대상자 수)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주거지원금을 지급할 대상자 수는 2026년 67명, 2030년 111명으로 추정
 - 대상자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 스토킹범죄 피해자, 전자장치 부착자의 피해자로 구분하여 추정
 - (가정보호사건 피해자) 법무부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해·폭행, 유기·학대·아동학사 등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은 최근 3년(2021~2023년) 평균 47건이므로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매년 47건으로 가정
 -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회도서관의 ‘데이터로 보는 스토킹범죄’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3년까지 스토킹범죄로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로 결정받은 건수는 총 15건으로 연평균 8건이 발생하므로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매년 8건으로 가정
 - (전자장치 부착자의 피해자) e-나라지표의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현황’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으로 위치추적을 하고 있는 특정 범죄자 수는 전년대비 12.6%씩 감소하고 있으며 본 추계에서는 연도별 해당 범죄자 수에 0.3%⁸⁾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에서는 추정한 대상자 모두에게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대상자 수를 주민등록인구통계(2023년 말 기준)에 근거한 지역별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

6) 동일한 소득기준 하에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7)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7)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6%	2.2%	2.2%	2.1%	2.1%	2.1%

8) 법무부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해·폭행, 유기·학대·아동학사 등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은 2024년 기준 총 13,074건이고 이 중 접근행위제한 보호처분은 39건으로 0.3% 차지

[표 2] 대상자 수 추정: 2022~2029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가정보호사건 피해자	47	47	47	47	47
스토킹범죄 피해자	8	8	8	8	8
전자장치 부착자의 피해자	13	11	10	9	8
합계(대상자 수)	68	66	65	64	63
1급지(서울)	13	12	12	12	12
2급지(경기·인천)	23	23	22	21	20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13	12	12	12	12
4급지(그 외 지역)	19	19	19	19	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인당 주거지원금) 주거지원금은 1급지 기준으로 2026년 397,822원/월, 2030년 430,616원/월으로 추정
 -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평균 가구원수는 2.2명이므로 2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지원금 산정
 -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는 2인 가구 기준으로 1급지(서울) 382,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240,000원, 4급지(그 외 지역) 201,000원
 - 본 추계에서는 1인당 주거지원금이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표 3] 1인당 주거지원금 추정: 2026~2030년

(단위: 원/월)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1급지	397,822	405,779	413,894	422,172	430,616
2급지	312,426	318,675	325,048	331,549	338,180
3급지	249,941	254,940	260,038	265,239	270,544
4급지	209,325	213,512	217,782	222,138	226,58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국가가 가정폭력범죄 등의 피해자에게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000만원, 2030년 5,9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억 9,3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대상자 수 (a, 명)	1급지	13	12	12	12	12	—
	2급지	23	23	22	21	20	—
	3급지	13	12	12	12	12	—
	4급지	19	19	19	19	19	—
	소계	68	66	65	64	63	—
1인당 주거지원금 (b, 원/월)	1급지	397,822	405,779	413,894	422,172	430,616	—
	2급지	312,426	318,675	325,048	331,549	338,180	—
	3급지	249,941	254,940	260,038	265,239	270,544	—
	4급지	209,325	213,512	217,782	222,138	226,581	—
추가재정소요 (=a×b×3개월, 백만원)	1급지	16	15	15	15	16	77
	2급지	22	22	21	21	20	106
	3급지	10	9	9	10	10	48
	4급지	12	12	12	13	13	62
	합계	60	58	57	59	59	293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이고, 지급대상자 수를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통계,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현황 등을 바탕으로 추정하며 1인당 주거지원금을 3개월분의 주거급여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주거지원금 지급대상자 수, 평균 월임차료 등에 따라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